

의안번호	제101호
------	-------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8. 19.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 안 번호	제101호
--------------	-------

제출연월일: 2022. 8. 19.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언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아래와 같음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	부창동게이트볼장(이전) 신축사업 부지 취득	문 화 체 육 과	
2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 취득(토지)	탄 소 중 립 과	

- 2022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사업별개요 참조					

○ 2022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해 당 없 음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건수	면적	기준가격	비고
	2건			12	3,282	1,000,000	
취득	부창동게이트볼장(이전) 신축사업 부지 취득	부창동 193-2 외 4필지	토지	5	1,437	500,0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 취득(토지)	부적면 반송리 산2-3 외 6필지	토지	7	1,845	500,000	
처분	0건						
	해당없음						

4. 사업별 개요

㉠ 부창동게이트볼장(이전) 신축부지 취득

■ 취득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노후화 및 구조적 특성(교량 밑에 위치)으로 일반 건축물보다 소음·진동에 취약한 (舊)부창동 게이트볼장의 이전·신축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체육환경 구축.

- 용도: 체육시설

○ 취득위치: 논산시 부창동 193-2번지 외 4필지

○ 사업규모: 게이트볼장 신축부지 1,437㎡

○ 사업기간: 2022. 8. ~ 2022. 9.

○ 총사업비: 1,950,000천원(시비)

○ 계약방법: 협의에 의한 취득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기타	비고
1,950,000	500,000	1,400,000	50,000	-	-	-

■ 취득대상 재산

(단위: ㎡, 천원)

재산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계	5건		1,437	500,000			
1	토지	부창동 193-2	전	459	183,580	2022. 9.	사업추진	
2	토지	부창동 193-3	철도	86	7,140			
3	토지	부창동 193-4	용지	30	1,165			
4	토지	부창동 193-7	대지	140	62,970			
5	토지	부창동 193-12	대지	722	245,145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 8. ~ 9.: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안 의결
- 2022. 9. ~ : 해당 부지 매입
- 2022. 12.: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 1. ~ 6.: 부창동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착공 및 완공

<담당자 현황>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문화체육과장	김 일 규	746-5390	
체육팀장	김 재 희	746-5751	
담 당 자	이 영 채	746-5753	

취득재산 현황(사진)



②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관련 취득(토지)

■ 취득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 용도: 논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 사업기간: 2022. 1. ~ 2023. 12.

○ 취득위치: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산2-3 외 6필지

○ 총사업비: 6,500,000천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단위: m², 천원)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비고
6,500,000	500,000	5,153,000	260,000	587,000	

○ 사업규모: 부지면적 1,845m², 건축면적 375m²

○ 주요시설: 수소충전소 1식(충전용량 500kg/일)

○ 계약방법: 협의에 의한 취득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m²,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 고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7필지		1,845	500,000		
1	토지	부적면 반송리 산2-3	임	793	68,000	2022. 10.	
2	토지	부적면 반송리 1-13	전	307	48,000		
3	토지	부적면 반송리 1-1	전	62	8,000		
4	토지	부적면 반송리 1-5	전	132	15,000		
5	토지	부적면 부항리 137-1	대	322	352,000		
6	토지	부적면 반송리 417	도	45.7	2,000		
7	토지	부적면 부항리 357-3	도	183.3	7,00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 8. ~ 9.: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 의회 상정(안) 제출
- 2022. 10.: 수소충전소 설계 완료
- 2022. 12.: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착수
- 2023. 12.: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완료

<담당자 현황>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탄소중립과장	김 선 기	746-5690	
탄소중립정책팀장	김 영 춘	746-5691	
담 당 자	차 용 주	746-5692	

취득재산 현황(위치도)

위치도



현황사진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